임신에서 출산까지

임신

시구정촌 사무소로

- 임신신고의 제출
  - 1-2(1) 모자건강수첩과 건강진단검사 진찰표를 받는다
- 1-3 (1)건강진단검사
  - 의료기관에서 진료
- 1-3 (2) 조산사 · 보건사에 의한 방문지도
- 1-3 (4) 어머니 · 부모교실

출산

14 일 이내에 시구정촌 사무소로

- 2-1 출생신고의 제출
  - 누가: 부친 또는 모친이
  - 필요한 서류:
    1 출생신고
    2 출생증명서
    3 신고하는 사람의 인감 또는 사인
    4 모자건강수첩
    5 국민건강보험증 (가입자만)
  - 필요에 따라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받는다
- 2-2 신생아의 국적취득
  - (1) 부모의 한쪽이 일본국적인 경우
  - (2) 부친 , 모친이 모두 외국적인 경우
    - 재류자격을 취득한다
    - 외국인등록을 한다